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525 자동차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기간 2009.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B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2,44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6. 트라제XG(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9. 2. 10. 자동차매매상사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양수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2011. 1. 11. 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부과유예하였고, 2011. 10. 31.과 2016. 6. 23.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세 중 2009. 1. 1.~2010. 6. 3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3건 합계 558,180원과 2010. 7. 1.~2011. 1. 1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2건의 합계 210,220원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3. 차량등록사업소에 사기매매를 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요청을 하였고, 2016. 10. 17. 차량회수 및 환가말소 처리를 사유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도난신고 접수에 따라 부과유예하던 과세기간 2011. 1. 11.부터 2016. 6. 30.까지의 자동차세 1,286,430원, 지방교육세 385,890원 합계 1,672,320원을 2016. 10. 24. 소급하여 부과처분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 2009. 1.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0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 2009. 1. 1. 부터 2016. 6. 30.까지의 자동차세 등 2,440,7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닌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0

2) 한편, 원고는 과태료가 면제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갑 제2, 6, 7,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판사 임한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0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끝.